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1
------------	------

발의연월일 : 2016. 11. 28.

발의자 : 박순자 · 송희경 · 서청원

이명수 · 정우택 · 김종태

김순례 · 김성태 · 박덕흠

박인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u> <u>개시·종료 통보) 감사원과 검</u> <u>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u> <u>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u> <u>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u> <u>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u> <u>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u> <u>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u> <u>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u> <u>를 통보하여야 한다.</u>